

광주지방법원 2024. 9. 5 선고 2023가단992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영

변 론 종 결 2024. 7. 18.

판 결 선 고 2024. 9. 5.

## 주 문

-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. 6. 7. 접수 제9955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원고는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고 한다)의

피담보채무인 차용금 1억 원이 모두 변제되었고,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<sup>1)</sup>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윤봉학

별지

1)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없다.